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07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변경	3
2. 부칙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6. 4.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축으로 삼고 산

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변경

-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② (생략)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 ----- <u>부산광역시</u> -----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제정¹⁾ 당시부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²⁾, 이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임.

-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 부문의 자본과 인프라가 서울을 비

1) 1953. 12. 30일 법률 제302호

2)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302호, 1953. 12. 30. 제정] 제3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못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이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고려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경제집중도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³⁾ 비중은 2016년부터 50%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융·보험업 부문 GRDP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비중이 6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도권 및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GRDP) 비교>

(단위: 조원,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 부문	수도권 (비중)	749.5 (49.3)	800.5 (49.5)	862.8 (50.5)	942.0 (51.9)	972.6 (52.8)	1,050.6 (53.3)
	전국 (비중)	1,519.4 (100.0)	1,615.8 (100.0)	1,709.7 (100.0)	1,814.1 (100.0)	1,842.4 (100.0)	1,972.4 (100.0)
금융· 보험업	수도권 (비중)	48.1 (64.9)	52.5 (63.9)	58.6 (65.2)	64.9 (65.7)	76.2 (68.0)	84.1 (68.3)
	전국 (비중)	74.1 (100.0)	82.2 (100.0)	89.9 (100.0)	98.8 (100.0)	112.1 (100.0)	123.1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그간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9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12월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하는 등 부산·대

3)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시·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구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여건에 관한 임직원의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⁴⁾와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평가도 있음.⁵⁾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부산광역시는 2009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함께 금융중심지⁶⁾로 지정되었으며, 부산 문현금융단지를 동북아의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였음.

- 그러나 주요 금융도시의 경쟁력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CFCI)⁷⁾

4)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비중은 2014년 10.6%에서 2022년 23.4%로 증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5)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 p.2.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7)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평가: 영국계 컨설팅 회사인 Z/Yen사가 2005년부터 세계 주요 금융도시의 경쟁력지수인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중국개발연구원(CDI)과 공동발표하고 있음.

에 따르면 2024년 3월 부산광역시의 순위는 27위⁸⁾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과 같이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고 부산광역시에 조성된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본점을 이전할 경우 수도권에 집적된 금융기관 및 산업체와의 업무협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서울 역시 아직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정책의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은행이 혁신성장금융,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글로벌금융, 통일금융 등 국내 정책금융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 관계부처, 법률, 조세, 기술, 컨설팅 등 다수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에 본점을 둔 지리적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음.⁹⁾

8) 2024년 3월 기준, 서울은 10위, 부산은 27위를 기록하였으나,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상하이 6위에 비해서는 낮음.

부산광역시 순위 변동: 51위('20년상)→36위('21년상)→30위('22년상)→37위('23년상)→27위('24년상)

9) 송원섭·강다연, 「국책은행 지방이전의 타당성 연구: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소, 2019.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
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함께, 산업은행
본점 이전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 공공금융기관의 집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동남권 특화산업 육성 및 부산 특화금융 중
심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 정부의 국
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산
업은행 이전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지방이전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부산 이전
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2022.9.29.), 금융위원회
에 ‘산은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23.3.27.),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
기관 지정(안)’을 제출하였고(2023.4.3.),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
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2023.4.27.) 2023년 5월 3일, 한국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음¹⁰⁾¹¹⁾.

10) 이전공공기관 지정고시(2023.5.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18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
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함.
－ 결정 취지: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
과 창출 가능

- 그 외에도 한국산업은행은 지방이전 컨설팅을 발주하여 지방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의 동남권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있음.¹²⁾

[산업은행 이전 추진 경과]

- '22.7.26.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
 -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별 특화 지원방안 마련
 - 국정과제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 균형위·기재부·금융위·국토부 등이 협력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 '22.9.29. : 산은, 부산이전 준비 전담조직(「지방이전 준비단」) 출범
- '22.11.22. : 정무위 법안1소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심의
- '23.2.23. : 산은, 지방이전 컨설팅 발주(PwC), 6월중 완료 예정
- '23.3.27. : 산은, 금융위에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 기초자료(「산은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제출
- '23.4.3 : 금융위, 국토부에 산은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안 제출
- '23.4.13 : 국토부, 균형위에 산은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안건 상정
- '23.4.27 : 균형위, 산은 지방이전대상기관 지정안 의결*
 - * 균형위원 총 34인 중 27인 출석, 22인 찬성으로 과반수 의결 충족
- '23.5.3. : 국토부, 산은 지방이전대상기관 지정 고시

- 향후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이 개정되면 지방이전계획(안)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사실행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부절차

11)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호)에서는 수도권 잔류기관이었음.

12) 동남권 영업조직 확대 153명→237명, 부산 동남권 투자센터 설립(3개 팀) 등

<향후 한국산업은행 이전 절차 추진 계획>

- (1) 산은, 지방이전 컨설팅 완료 및 지방이전 계획안 마련
 - 컨설팅 완료를 계기로 산은(사측)이 구체적 이전방안을 마련하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 및 국회 협의를 거쳐 내부안 확정
 - 지방이전 계획안에는 ‘지방이전 규모’, ‘이전 추진 필요성’, ‘이전추진시 기대효과’, ‘직원 이주지원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
- (2) 금융위·산은, 지방이전 계획안 국회 설명 및 산은법 개정 추진
 - 이전규모 등 구체적인 지방이전 계획안을 국회에 설명하고, 산은법 개정에 대한 여야합의 요청
- (3) 균형위, 산은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
 - * [혁신도시법 §4] ①산은의 금융위 앞 안건 제출 → ②금융위의 국토부 앞 안건 제출 → ③국토부의 균형위 앞 안건상정 → ④균형위 심의·의결 → ⑤국토부 고시
 - 산은법 개정과 연동하여 최대한 신속히 균형위 절차 진행
- (4) 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실질추진 및 집행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 한편,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본점 소재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금융공공기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그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한 경우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한국은행 및 금융공공기관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련 법률 규정>

구분	기관명	법률 규정
법률 명시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관 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전: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전: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이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서 각각 부산 및 대구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였던 법률 규정을 개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관에서 소재지를 규정하였음.

○ 개정안과 같이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정관으로 본점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 시 법률 개정에 비해 결정과정이

나 소요기간 면에서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법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본점 소재지
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실제 지방이전 과정에서 정관상 본
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부칙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한국산업은행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안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행위 등)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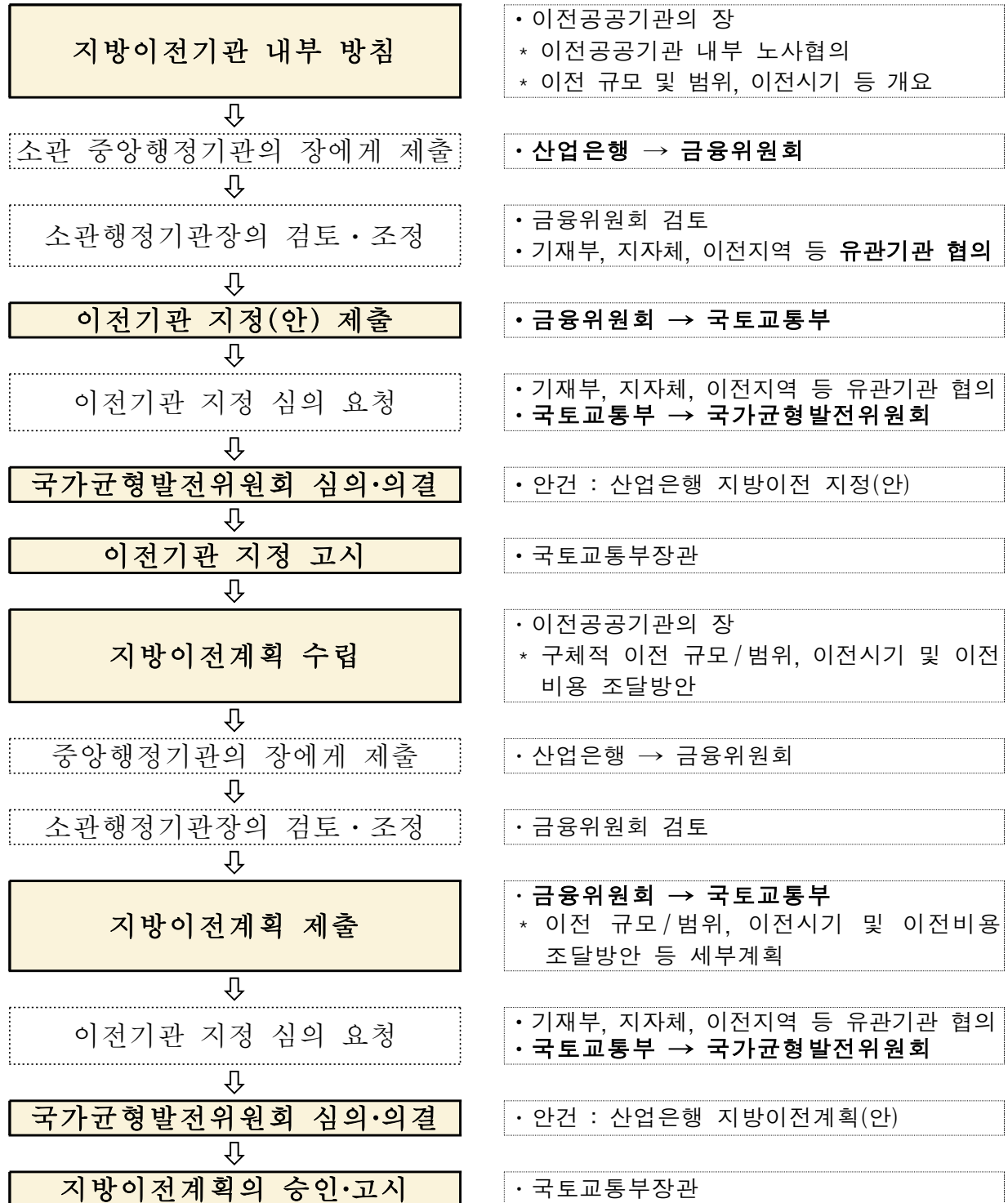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된 법률을 시행하도
록 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해
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이전계획 수립·제출·승인 등의 행
정절차 외에도 사옥 건설 및 실질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개정안과 달리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행위 관련 규정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규율방식에 따라 부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

【참고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부절차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